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박춘선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,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
□ 가로수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녹지입니다.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부족한 실정입니다.

□ 이에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(연차별 가로수계획)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연차별 가로

수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·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

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

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.

또한 안 제7조의2에서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(연차별 가로수계획 등)을 조정하였습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로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